붙임 3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 1 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생략)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 항, 제 15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본문 현행과 같음) ----------제 10 조, 제 13 조 제 1 항, 제 16 조 제 1 항----------.
제 3 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생 략)	**제 3 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2 항 제 1 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삭 제>
④ ~ ⑤ (생 략)	③ ~ ④ (현행 제 4 항부터 제 5 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제 3 항, 제 4 항 ---------- ---------- ---------- ---------- ---------- ----------.---------- ---------- ---------- ----------.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⑧ 제 6 항---------- ---------- ---------- ---------- ---------- ----------.---------- ---------- ---------- ---------- ---------- ---.

제 6 조(담보) ① (생 략)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 13 조에 준하여 (후략)	**제 6 조(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제 14 조--------- (후략)
제 7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 ② (생 략) ① ~ ⑤ (생 략) ③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3. (생 략) 4. 제 5 조, 제 19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 7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외의 부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제 20 조---------- ---------- ----------

④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제 6 조 제 1 항, 제 15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④ (각 호 외의 부분 현행과 같음) 1. ---------- 제 16 조---------- ---------- ⑤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 천만원 미만으로서 제 3 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인금융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신 설>	⑥은행이 제 5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⑦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

제 8 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 8 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통지)**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 7 조 제 5 항에 해당되어 … (후략)	③ ---------- ------- ---------- -------- ---------- 제 7 항---- ---- …(후략)
<신 설>	⑤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제 7 조 제 5 항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행은 제 7 조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 9 조 (채무조정 요청)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 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생 략) ④제 1 항, 제 2 항의 경우에도, 제 7 조 제 5 항을 준용합니다.	제 10 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 7 항----------.
제 10 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 7 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 (후략)	제 11 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 ------- ---------- 제 10 조------ --------- … (후략)

제 11 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생략) 제 12 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 (후략) ③ 제 10 조, 제 11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생략) 제 13 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 ----- ---------- --- 제 11 조---------- ---------- ---------- ---------- ---------- ---------- ---------- ----------. 제 12 조--------- ---------- --------. ② ---------- -- 제 11 조---------- ---------- ----------, … (후략) ③제 11 조,제 12 조 ---------- ------ ---------- ---------- ---------- ----------

	---------- ---------- ----------제 14 조 ---------- -------- --------.
제 13 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 (후략)	**제 14 조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 ------- ---------- ---- 제 11 조--- ---------- ---------- … (후략)

제 14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제 15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 11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 (후략)	① ---------- 제 12 조---------- -----, … (후략)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3 조에 준하여 … (후략)	② ---------- ---------- ---------- ---------- ---------- 제 14 조---------- -- … (후략)
제 15 조 ~ 제 17 조 (생 략)	**제 16 조 ~ 제 18 조** (현행 제 15 조부터 제 17 조까지와 같음)
제 18 조(통지의 효력)	**제 19 조(통지의 효력)**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② -------------- 제17조--- ------ ------------------- -------------------------- -------------------------- -------------------------- -------------------------- -------------------------- -------------------------- -----. ---------------------- -- -------------------------- ------ -------------------------- ------ ------------------- ------------ ------------- ----- 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 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 제 21 조 (생 략)	**제 20 조 ~ 제 22 조** (현행 제 19 조부터 제 21 조까지와 같음)
제 22 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단서 신설>	**제 23 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 개월간 그 내용을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 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신 설>	2. 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신 설>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신 설>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일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전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23 조 (생 략)	**제 24 조** (현행 제 23 조와 같음)

- **시행일 : 2024.10.17**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